

---

---

## 일제말 赤崎灣 추가매축 연구

배석만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

---

### 目 次

- |                       |                  |
|-----------------------|------------------|
| I. 서 론                | IV. A구역 추가매축의 시행 |
| II. A구역 추가 매축계획과 그 배경 | VI. 결 론          |
| III. 석유업자들의 반발과 계획 수정 |                  |

### I. 서 론

본 연구는 필자가 항도부산 28호에 게재한 논문 '1930년대 부산 赤崎灣 매축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동 논문에서는 매축업자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가 1934년 4월말부터 1937년 8월까지 3년 4개월의 공사기간을 통해 총 12만평의 부지를 매축한 적기만 매축 1기 공사를 다루었다.<sup>1)</sup> 그러나 이케다의 적기만 매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존 A구역을 확장하는 2기 추가 매축이 시행되었고, 이어서 확장된 A구역에 다시 지금의 8부두에 해당하는 부두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3기 매축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차례의 추가 매축은 최초 1기 매축공사가 거의 완

---

1) 배석만, 2012, 「1930년대 부산 赤崎灣 매축 연구」, 『港都釜山』 2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성된 1937년 6월부터 시작되어 1944년말까지 진행되었고, 약 5만 평의 부지가 새롭게 조성되었다. 따라서 적기만 매축의 전체 모습은 1934년부터 1944년까지 약 10년간 총 3기에 걸친 공사가 실시되어 대략 17만평의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고 일단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적기만 추가 매축 중 1937년부터 시작하여 1940년 완료된 2기 매축의 과정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1차적 목적이 적기만 추가매축의 실태를 밝히는 것이지만, 그 분석과정에서는 전시경제구축을 위한 각 방면의 관계주체들의 실태도 일정하게 드러날 것이다. 적기만 추가매축의 전개 과정이 매축을 담당한 '재조일본인기업가' 이케다와 자본을 투자한 국책회사 동양척식(주), 그리고 매립된 부지의 예상수요자였던 부산의 석유업자들, 매축인가와 관련한 조선총독부와 군부 등 관련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경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기만 추가매축을 둘러싼 이들 관련 주체들의 길항관계를 사실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것은 전시체제기 민간이 주체가 된 항만인프라 건설이라는 전형적인 국책사업의 전개과정이 군관민 혼연일체의 일사분란한 추진과정이라기 보다는 시간을 요구하는 대립과 조정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수행되고 있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 II. A구역 추가 매축계획과 그 배경

1937년 8월 총공사비 125만엔을 들여 약 12만평의 상공업용 부지를 조성한 적기만 매축공사가 완성되었다.<sup>2)</sup> 1934년 4월말 매축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만 3년 4개월 만에 예정된 모든 구역의 매축을 완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적기만 추가매축은 이 시점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즉 최초 매축공사가 완공되기 2달 전인 1937년 6월 매축지 중 A구역을 추가로 확장하는 2기 공사가 착공되었다.<sup>3)</sup>

적기만 2기 매축공사의 매립면허는 1937년 1월 30일자로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 土第44號로 허가된 매립면허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총 1만8,634평을 매축하고, 공사기간은 2년, 준공 후 물양장과 護岸 등은 국유로 한다는 것이었다.

2) 釜山築港株式會社, 「事業概要(1939.2)」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일본국립공문서관 폐쇄기관청산관계문서(청구기호:分官-09-040-00·財001502181100).

3) 「公有水面埋立免許要項」 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국가기록원 소장문서(MF번호:88-0285); 한편 이케다의 아들 이케다 쿠니지(池田國司)가 쓴 아버지 전기 『池田佐忠 事業と人生』(1999)에는 적기만 1기 매축이 1937년 5월에 준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56쪽). 이 경우 2기 매축은 1기 매축 준공 후 시작된 것이다. 쿠니지가 쓴 이케다 전기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1914년 이케다의 차남으로 태어나 성인이 된 1930년대 후반 이후 줄곧 아버지 설립 회사의 중역 등을 맡아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이다. 1944년 10월 현재 31세의 쿠니지는 아버지가 동척에 빌린 77만4,600엔에 대한 담보제공자이자 연대보증인이었다(「有第四號池田佐忠氏貸付金ニ關スル件(1944. 10. 15)」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 일본국립공문서관 폐쇄기관청산관계문서(청구기호:分官-09-040-00·財001502180100)).

4 / 港都釜山 제29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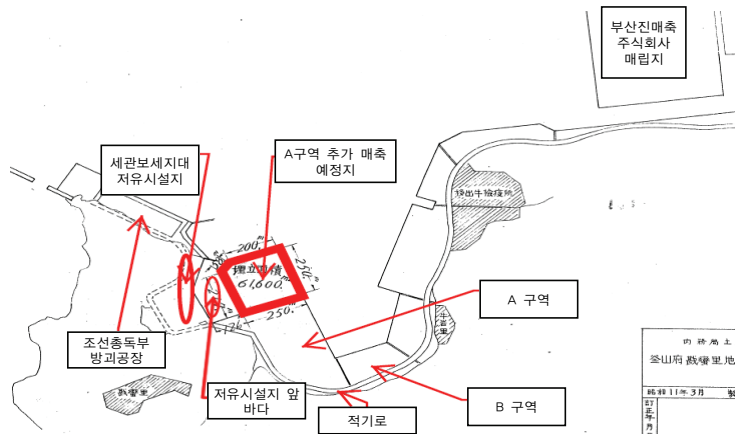
<표 1> 적기만 추가매축 개요

면허 연월일	1937년 1월 30일
면허 번호	土第44號
면허 부여 대상자	池田佐忠
매립면적	18,634평
매립목적	공장부지 조성
부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면허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인가신청 할 것.</li> <li>2. 매립공사는 실시설계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수하고, 실시 설계 인가일로부터 2년 내에 준공할 것.</li> <li>3. 공사 착수시에는 즉시 착수 보고서를 제출할 것.</li> <li>4. 공사 준공인가와 동시에 물양장, 護岸石壇은 국유로 함.</li> </ol>

자료 : 朝鮮總督府, 「公有水面 埋立ノ件 指令案(1937.1.26)」 朝鮮總督府, 『埋立竣工 書綴(昭和十五年)』, 국가기록원 소장문서(MF번호:88-0285)

매립공사 구역을 지도상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은데, 기존 A구역 매축지의 전면부 해면을 사각형 형태로 매축하여 확장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적기만 추가 매축 대상지역



자료 : 「釜山府 戴蠻里 地先埋立 位置平面圖」 朝鮮總督府, 『埋立竣工 書綴(昭和十五年)』

그런데 이케다가 A구역을 확장하는 추가매축 계획을 수립하여 조선총독부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매립 면허를 받은 것보다 1년이나 앞선 1936년 1월이었다.<sup>4)</sup> 이때는 아직 적기만 1기 공사로서 A구역 매축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A구역 공사계획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적기만 1기 매축공사에서 북향 적기반도 쪽의 A구역은 원래 그 옆 B구역과 함께 저유시설이 들어서는 부지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었다. 석유업법 시행에 따른 석유업자들의 기존 영도 등의 저유시설 이전 및 새로운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용도로써 사용될 예정이었고, 이케다가 적기만 매축에 나서게 된 근본적인 동기를 제공한 것이었다. 그런데 석유업법이 예상보다 일찍 시행됨으로 인해 석유업자들은 이케다의 매축공사를 통한 부지조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이 A구역 매축예정지 바로 옆 적기반도 해안가의 세관보세지대<sup>5)</sup>에 저유시설을 이전·신설함으로써 부지의 판로가 없어진 A구역은 매축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미 매축이 완료되어 있던 B구역 역시 부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다.<sup>6)</sup> 이케다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 석유업자가 되어 A, B구역을 자신의 저유시설 부지로 활

4) 池田佐忠, 「慶尙南道東萊郡西面戡蠻里地先 公有水面埋立願(1936.1.18)」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5) 이 지역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매축, 조성된 16,173평의 부지이다. 1920년 12월 관유지로 편입되어 부산세관의 용지로 지정되었고 보세공장부지로 사용 중에 있었다(池田佐忠, 「埋立免許願調查書(1936.3)」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6) B구역은 1934년 7월 매축공사에 착수하여 1935년 7월까지 공사가 거의 완성되었다(배석만, 앞의 논문, 73, 83쪽).

용하고자 하였다. 멕시코의 원전 개발을 통해 매년 100만톤의 원유를 도입하여 국내 정유업자에게 공급하는 한편으로 잉여분은 대중국 무역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이케다 석유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이었다. A,B구역에는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저장시설 및 이케다 스스로도 정유업을 하기 위한 시험공장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었다.<sup>7)</sup>

A구역의 추가 매축계획은 이렇게 A구역의 공사착수 지연, 매축된 B구역의 부지판매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다는 측면과, 그 타개책으로 이케다가 자신의 석유사업 관련 시설을 이 구역에 건설하기로 한 측면이 동시에 배경으로 작용하여 나온 것이었다. 다시 말해 A구역 매축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매축 공사계획을 들고 나온 것임과 동시에 실제 이케다가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석유사업을 위한 부지 마련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기만 매축의 공동사업자이자 대부분의 필요자금을 투자하고 있던 동척과의 관계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애초 동척이 이케다 매축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은 기존 이케다가 동척에 지고 있던 부채를 청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즉 적기만 매축사업을 통해 이케다가 이윤을 창출하게 하고 그것으로 그간의 동척에 지고 있던 부채를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척은 이케다와 공동사업계약을 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매축공사 전에 매축예정부지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져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그러므로 동척은 부지구입자가

---

7) 관련해서는 배석만, 앞의 논문, IV장 참조.

없어진 A구역의 공사착수에 대해 반대했고, 이케다가 대안으로 내어놓은 멕시코 원전개발을 통한 석유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그 전망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sup>8)</sup>

이케다가 조선총독부에 A구역 추가매립 면허신청을 한 1936년 1월 시점의 동척의 입장은 부지구입자가 없는 A구역의 공사착수를 반대하는 한편으로, 완공된 B구역 부지 역시 전망이 불투명한 이케다 석유사업 부지로 묶어 두는 것을 거부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주문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1936년 1월 16일자 이케다 매립지에 대한 동척 부산지점장이 상급기관인 동척 조선지사에게 낸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B구역은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매매 계약이 없는 이유는 … 이케다씨가 A, B구역을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하려는 의향이 있어서 B구역의 매각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완성지역의 換價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에 B구역의 매각 방침을 재차 표명한다.”<sup>9)</sup>

이케다의 A구역 추가매립계획은 이와 같은 동척의 강경한 반대를 불식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1936년 1월 18일자로 조선총독 우가키 카즈시게(宇垣一成) 앞으로 제출한 매립인가 신청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최초 A구역매립지의 전면부 해안을 20만엔의 공사비로 다시 2만평 정도 매립하는 것이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8) 관련해서는 배석만, 앞의 논문, IV장 참조.

9) 「池田氏赤崎埋立地ニ關スル件(1936.1.16)」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일본국립공문서관 폐쇄기관청산관계문서(청구기호:分官-09-040-00·財001502182100).

<표 2> 1936년 1월 제출 매립신청서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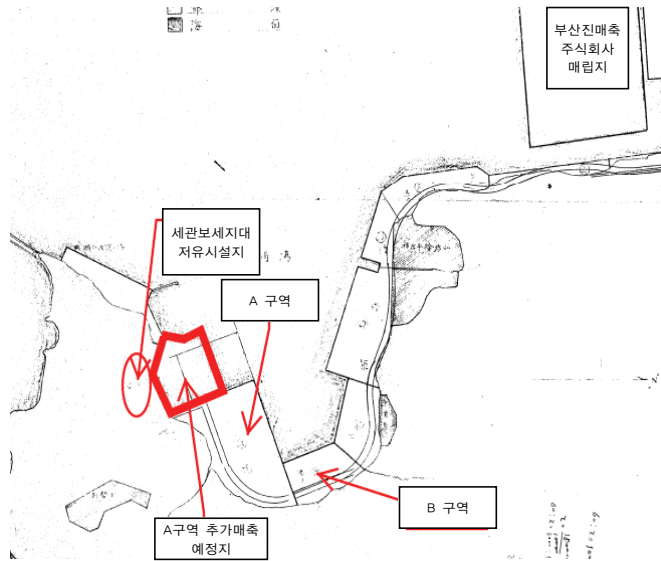
매립 장소	경상남도 동래군 서면 감만리 지선
매립 면적	20,307평
매립부지 내역	유효지(철도예정지 포함): 16,459평 도로부지: 3,250평 開渠: 278평 물양장: 320평
매립목적	공장 및 油槽부지 조성
공사비	20만엔
공사착수기간	면허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준공기간	면허일로부터 2년반 이내

자료: 池田佐忠, 「慶尙南道東萊郡西面戡蠻里地先 公有水面埋立願(1936.1.18)」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표 2>를 보면 앞의 <표 1>의 1937년 1월 인가받은 매립계획과 면적, 매립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석유업자들이 석유업법 시행에 의해 세관보세지대에 이설 또는 신설한 저유시설지역의 앞쪽 해면의 매축 여부에 있었다. 이케다가 1936년 1월 인가 신청한 최초 매축계획은 <그림 2>에서 보듯이 세관보세지대 저유시설지역 앞쪽 해면을 모두 매립하는 것이었다. 반면 1년 뒤인 1937년 1월 인가받은 계획은 앞의 <그림 1>에서와 같이 앞쪽 해면을 남겨둔 매립이었다.



<그림 2> 1936년 1월 제출 매립신청서상의 대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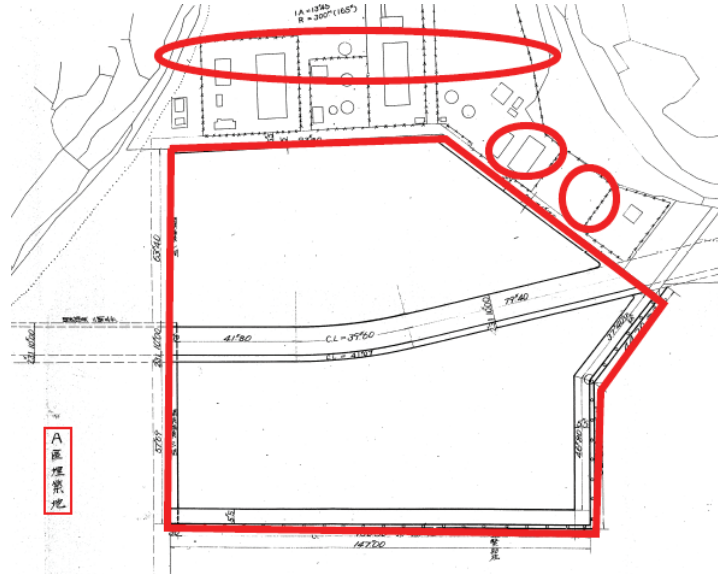


자료: 「位置表示圖」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이케다의 최초 매축구상이 세관보세지대 앞 해면을 매립하는 것이었음은 <그림 3>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림 3>에서 위쪽 타원형으로 표시한 부분이 세관보세지대의 저유시설지인데, 다각형으로 표시된 이케다 매축예정지와 완전히 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sup>10)</sup>

10) <그림 3>의 매립지 가운데를 관통하는 두 줄의 선은 기존 매립지의 주 도로인 적기로의 연장으로 조선총독부 직영매축지 및 북방과제 매축용 方塊 생산공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매축계획에서는 세관보세지대 앞 해면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그림 1>에서 보듯이 적기로는 세관보세지대 뒤편을 우회하여 방괴 생산공장으로 이어지도록 되었다.

<그림 3> 추가매립 대상지 평면도



자료: 「公有水面埋立平面圖」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바다와 멀어지는 세관보세지대 저유시설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었다. 특히 기존에 해상의 유조선에서 직접 저유탱크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해 깔아 놓은 송유관이 무용지물이 되었다.<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케다의 A구역 추가매립의 핵심은 이 세관보세지대 저유시설지역의 앞쪽 해면을 매립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케다의 노림수가 있었다. 이케다 추가매축으로 인해 해안을 상실하게 되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세관보세지대 저유시설들을 이미 매축이 완성된 B구역으로 이전시키는 한편으로 확장된 A구역은 이케다

11) 池田佐忠, 「埋立免許願調查書(1936.3)」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자신의 석유사업 부지로 삼겠다는 구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동척의 이케다 매축사업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케다씨가 (설립하는) 대동석유 부지로서 A구역만으로는 면적이 다소 부족하다면 이케다씨가 A구역에 이어서 보세지구 앞 해면 매립의 매축면허권을 취득하여 매립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현재의 (세관보세지대) 저유지는 해안에서 떨어지는 것이 되어서 현재의 가설 석유탱크는 결국 모두 B구역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sup>12)</sup>

이케다가 A구역 공사가 착수되지도 않은 1936년 1월의 시점에서 A구역에 대한 추가매립계획을 추진한 목적은 B구역의 판매를 주장하는 동척의 주장을 세관보세지대 저유시설을 이전시키도록 하여 들어주는 한편으로 원래 A, B구역 모두를 사용하려고 했던 자신의 석유사업 부지는 B구역 대신 A구역 추가매립지를 통해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B구역의 매립면적이 1만5,000평 정도였으므로 A구역 추가매립으로 조성되는 2만평으로 충분히 상쇄되고 남음이 있었다. 위의 언급에서 보듯이 동척 역시 기존 A구역 부지로 대동석유 부지가 협소할 경우 부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케다는 A구역 매축의 관건이 되는 자신의 석유사업을 추진을 위해 당시 정계의 거물이자 조선총독을 역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의 직접적인 후원아래 일본과 조선을 넘나들며 로비를 벌였다.<sup>13)</sup> 또 세관보세지대의 저유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도 부지

12) 「池田氏赤崎埋立地ニ關スル件(1936.1.16)」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소유자인 세관본부에 대해 직접 교섭하는 한편으로 B구역 이전 불가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관계 로비를 진행하였다.<sup>14)</sup> 1936년 3월 20일자 경남도지사를 경유하여 조선총독에게 올린 ‘매립 면허원조사서’에서 이케다는 세관 보세지역에 저유시설이 존재하는 것은 세관이 장차 이 지역을 사용하는 계획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해사출장소의 경우는 부지 확보가 당면한 문제라는 점을 들어 저유시설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sup>15)</sup>

기존 A구역 매축의 관건이 되었던 석유사업 추진은 이후 사이트의 전폭적 지원 아래 이케다가 직접 멕시코로 건너가 원유조사 및 현지 관련기업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1936년 5월에는 이를 토대로 대동석유를 설립 등으로 빠르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1936년 7월 마침내 A구역 매축공사가 착공되었다. 그러나 기존 세관보세지대 앞 해면을 매립하는 A구역 추가매축계획은 이케다의 계획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937년 1월 면허가 인가되기까지 일정기간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 Ⅲ. 석유업자들의 반발과 계획 수정

1936년 1월 18일자 면허인가가 신청된 이케다의 적기만 A구역 추가매립계획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예상대로 세관 보세지역에 저유시설을 가지고 있던 부산지역 석유업자들이었다.

13) 관련해서는 배석만, 2012, 「부산항 매축업자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기업 활동」, 『한국민족문화』 4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참조.

14) 「池田氏赤崎埋立地ニ關スル件(1936.1.16)」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15) 池田佐忠, 「埋立免許願調查書(1936.3)」 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석유업자들은 1936년 7월 3일자로 7개 기업 연명으로 이케다 매축계획에 대한 반대 청원서를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앞으로 제출하였다.<sup>16)</sup> 참여한 7개 기업은 후지타상점(藤田商店), 아시히석유(旭石油)조선출장소, 키시상점(岸商店)부산지점, 미츠비씨상사(三菱商事)부산출장소, 미츠이물산(三井物産)경성지점부산과출원, 조선광유(朝鮮鑛油), 텍사스오일(テキサス油)회사였다.

이들은 청원서를 내는 이유와 관련하여 이케다의 매축이 이루어지면 기름의 반출입이 심각한 곤란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확하여 이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관련하여 석유업자들은 반대 근거를 몇 가지 측면에서 들고 있다. 우선은 세관보세지대의 기능상실로 세관의 부지 운용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매축이 이루어지면 보세공장지대에서 해안에 이르는 ‘연결성’이 이케다 사유지에 의해 차단되어 보세지역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케다의 구상이기도 한 이케다 매립지로 저유시설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석유업자들은 만약에 매축으로 생성된 이케다 부지 중 해안과 접한 지대와 현재 보세지대를 동일한 면적으로 맞교환하여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매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장소에 거대 중량의 유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특히 泥海의 매축은 이러한 위험이 한층 가증되는 것으로 시설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저유시설 이동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하며 불가함을 역설하고 있다. 즉 만약 저유탱크들을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 우선

16) 「請願書(1936.7.3)」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저장하고 있는 기름을 전부 반출하여 빈 탱크로 만든 후에 해야 하는데, 현재의 설비로는 저장유를 옮길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매축공사 자체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반출입 화물의 하역이 중지될 수밖에 없는 점, 매축으로 인해 기존 저유지에서 해안까지의 거리가 길어지는데 따른 운송비 증가, 운반상의 위험 증가 등도 지적하였다.<sup>17)</sup>

7개 석유업자들은 9월 4일 조선총독부 식산국장 앞으로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케다 매축신청을 심의 중이던 조선총독부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진정서 내용은 총독부가 보고받기를 원했던 당시의 하역상황 및 장래 계획, 희망사항 등이었다. 여기서 석유업자들은 매년 늘어나는 석유수요와 석유업법 시행에 따른 시설 확충 의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사히 석유가 창고 2동 250평, 그리고 미츠이물산, 미츠비씨상사, 키시상점, 아사히석유가 8기의 탱크를 건설하여 1만4,100톤의 저유능력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 계획된 확장 시설들은 현재 자신들이 위치한 부산세관 보세지대에서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지를 이용하면 충분히 해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석유업자들은 100톤급 중유수송선이 만조시에 겨우 들어올 수 있는 현재의 보세지대 앞바다의 얕은 수심을 준설을 통해 개선하는 한편으로 접안시설을 확충하면 현재의 지역은 일층 면목을 일신하여 인화물질 장치장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특수항의 형태를 구현하여 그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자신들이 현재 저유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17) 「請願書(1936.7.3)」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세관보세지대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추가 저유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며, 접안시설 구축, 준설 등을 통한 항만능력 향상이 이루어지면 부산항 어느 지역보다 위험물 장치장으로 손색이 없는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관보세지대 부지가 협소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저유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케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sup>19)</sup>

적기만 A구역 추가매축을 놓고 벌어진 이케다와 석유업자들 간의 대립 속에서 조선총독부 역시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 상당히 고민한 것 같다. 이케다가 인가신청서를 제출한지 이미 8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위에서처럼 다시 석유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던가, 1936년 9월 10일자로 이케다 추가매립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이 내무국장에 보낸 내부 공문서의 말미에 '본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 중'이라고 기록한 것 등은 이런 고심의 흔적들로 볼 수 있다.<sup>20)</sup>

조선총독부 고심의 결과는 1936년 연말쯤 나왔는데, 이케다가 신청한 매축지 A구역 추가 확장공사를 인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석유업자들의 승리였다. 조선총독부는 인가조건으로 1936년 1월 이케다가 신청한 계획의 대폭적인 변경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대체로 석유업자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었던 기존 저유지대 앞

18) 「陳情書(1936.9.4)」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19) 「池田氏赤崎埋立地ニ關スル件(1935.12.24)」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20) 財務局長, 「釜山戡蠻里地先海面埋立計劃ニ關スル件(1936.9.10)」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해면 매립과 관련하여 앞의 <그림 1>에서 보듯이 매립 구역을 일정하게 이동시키는 한편으로 매립면적을 축소하여 기존 석유업자들의 저유시설이 있는 세관보세지대 앞 해면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케다의 추가매축지가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보세지대 앞바다의 船溜場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었다.

추가매축지의 용도가 '공장부지'로 국한된 것도 석유업자의 승리를 의미했다.<sup>21)</sup> 이케다가 최초 신고했던 부지용도는 '공장 및 油槽부지 조성'으로 사실상 보세지대의 저유시설 이전과 자신의 대동석유 시설 부지로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다. 그러나 저유시설 용도로 매축지를 사용하는 것이 매립면허 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석유업자들이 염려하던 이케다 매축지로의 이전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매축된 부지를 저유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장 부지로의 사용만으로 국한시키는 데는 군부의 입김도 크게 작용했다. 적기만 요새지대를 관할하는 육군의 진해만요새사령부와 항만 통제를 담당하는 해군 진해요항부가 저유시설 용도로 매축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대의 이유는 아쉽게도 '군사상의 지장이 있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데<sup>22)</sup>, 아마도 석유업자들의 주장 중에서 매축에 따른 기존 저유시설 기능 마비 및 시설 이전이 발생시키는 각종 혼란을 가능한 예기로 받아들이고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중요군수물자인 석유공

21) 池田佐忠, 「公有水面埋立目的變更届(1937.1.6)」 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22) 鎮海灣要塞司令官 石原常太郎, 「釜山戡蠻里地先海面埋立ニ關スル件(鎮地第一八二號)」 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급의 차질은 대륙과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당시 상황에서 군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이처럼 1936년말에 조선총독부가 결정한 A구역 추가매축 인가 내용은 이케다가 기존 저유지대 앞 해면을 매립하여 석유업자들이 저유시설을 자신의 매축지로 옮겨오도록 하는 구상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한편으로 이케다 자신의 석유사업 부지로의 사용도 일정하게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케다는 추가 매축지를 기존 A구역 매축지에 일직선 상으로 매축하도록 위치를 변경하여 기존 저유지대 앞 해면을 보존하고 매축지의 용도에서 저유시설 부지용도를 제외하는 조선총독부의 매축계획 변경요구를 받아들이고 A구역 추가매축의 면허를 1937년 1월 30일자로 받았다. 조선총독부는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진해요항부사령관에게 보낸 이케다 매립인가 관련 통지안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케다 매축 出願地 부근 일대는 부산세관의 사설보세지역에 해당하여 석유탱크 및 동 창고 부지로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해면과 직접 접해있지 않으면 이용이 곤란한 것으로 만약에 매축 출원인(이케다)의 계획에 의거하여 매축이 실시될 경우에는 상당한 악영향이 있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船溜지역을 存置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매축을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출원인에게 확인한 결과 출원인이 수정계획 대로 시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sup>23)</sup>

그러면 이케다가 원래 자신의 구상과는 차이가 많은 변경계획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료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23) 朝鮮總督府, 「通知案(1937.1.30)」 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지는 않지만, 우선 자신의 석유사업 부지 확보라는 의도는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지만, A구역 추가매축은 이케다가 A구역과 함께 원래 대동석유 부지로 염두에 두고 있던 B구역의 사용을 동척이 반대한 것에 따른 대책이기도 했다. A구역 매축이 동척과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1936년 7월 이케다 석유사업의 주체인 대동석유 부지로서 공사에 들어간 상황이었으므로 매축지 B구역을 대신할 대동석유 추가부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비록 추가매립지가 저유시설부지로 지정되기를 희망했던 이케다의 바램대로 되지 않고 공장용지로 용도가 국한되었지만, 대동석유의 계획 중 하나인 시험용 정유공장 시설을 건설하면 되었기 때문에 큰 장애요인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변경된 매축계획을 이케다가 받아들인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A구역과 관련된 새로운 매축계획을 구상했던 것을 들 수 있다. A구역 추가확장 매축지에 이어서 그 끝단에 다시 매축을 실시하여 부두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케다는 1937년 6월 10일 A구역 추가매축 공사를 시작한 3개월 뒤인 10월 15일자로 조선총독부에 매립면허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A구역 추가 매립지에서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시행 중이던 부산항 준설 경계선(浚渫線)까지 매축을 실시하여서 새롭게 32,000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매축공사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리고 조성된 부두에는 이케다가 추진하던 또 다른 사업인 부산진-적기 간의 임항철도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1만톤급 선박의 정박이 가능한 안벽을 축조하여 해륙운송이 직접 연결되도록 하였다.<sup>24)</sup> 부산항 준설은 총

24) 釜山築港株式會社, 「事業概要(1939.2)」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정확한 매립면적은 31,745평이었다(釜山築港株式會社, 「資産調書(1939.4)」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독부 직영사업으로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부산항 확장 공사의 일환이었다. 130만엔의 공사비를 들여 1937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계획된 공사기간은 2년이였다.<sup>25)</sup> 준설 공사가 완성되면 1만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케다의 부두지대 조성매축은 이 준설선까지 매립지를 돌출시켜 1만톤급 선박의 직접 접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이케다의 부두지대 조성매축은 조선총독부의 부산항 확장계획과 긴밀한 관계 속에 추진되는 것이었고, 매축계획 자체가 A구역 추가 확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이케다는 A구역 추가확장이 비록 석유업자들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변경된 매축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만 3기 매축인 부두지대조성 매축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 IV. A구역 추가매축의 시행

석유업자들의 반대 등으로 약 1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원래 계획보다 대폭 수정된 내용으로 1937년 1월 30일자로 매립면허를 취득한 이케다는 면허내용을 토대로 공사실시를 위한 설계인가신청서를 2월 22일자로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다. 22만엔의 공사비를 들여 1만8,980평을 매축한다는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25) 司政局釜山土木出張所, 「釜山港擴張工事實施計劃書(1942.3.30)」朝鮮總督府, 『昭和十六年度 港灣修築改良工事實施計劃』, 국가기록원 소장문서(MF번호:88-0322)

<표 3> 설계인가신청 주요 내용

공사항목	면적(평)	공사비(엔)	비고
매립	18,521	149,624	매립총면적 18,980평
물양장	459	52,494	
護岸		7,121	
繫船柱		759	
공사비 합계		209,998	
잡비		10,002	
합계	18,980	220,000	

자료: 池田佐忠, 「赤崎灣埋築第二期 計劃變更許可並ニ實施設計認可申請書(1937.2.22)」  
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이케다는 설계인가 신청과 함께 매축계획변경 허가신청서도 같이 내었는데, 그 이유는 1월 30일자로 인가받은 매축 면적과 설계인가신청서 상의 매축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매립면허 상의 허가 면적은 1만8,634평인데 대해(<표 1> 참조), 설계인가신청서 상의 매축면적은 이보다 346평이 넓은 1만8,980평이었다. 차이가 난 이유는 실시설계 과정에서의 공사 편의를 위한 변경으로 큰 문제는 아니었다. 설계인가신청 및 매축계획변경허가신청은 6월 2일부 '土第196號'로 인가되었고<sup>26)</sup>, 이에 대하여 6월 10일 이케다가 공사착수서를 조선총독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1만8,980평의 적기만 A구역 추가매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27)</sup> 매립면허 상에 공사 착수 후 2년 내에 준공하는 것이었으므로(<표 1> 참조), 1939년 6월까지의 공사가 완

26) 朝鮮總督府, 「公有水面埋立工事計劃變更並ニ實施設計ノ件(1937.6.2)」.

27) 池田佐忠, 「工事着手届(1937.6.10)」.

료되어야 했다. 최종 확정된 매립구역을 표시하면 <그림 4>과 같다.

<그림 4> 확정된 A구역 추가매립구역 평면도



자료 : <표3>과 동일.

정식명칭 '적기만매축 제2기공사'로 시작된 A구역 추가매립공사는 1940년 2월 완공되었다.<sup>28)</sup> 매립면허상의 공사기간은 1939년 6월까지였으므로 8개월 정도 지연된 것인데, 그 주요한 원인은 기후 문제와 매립용 토사 굴착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9)</sup> 매립토 문제가 생긴 것은 예상보다 침하와 유실이 심해서 매립토가 10% 정도 더 필요하게 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sup>30)</sup> 관련하여 이케다는 1939년 5월 15일자로 매축공사기간을 1940년 6월까지 1년 연장해 줄 것을 조선총독부에 신청했고, 10월 9일자로 승인되었다.<sup>31)</sup>

매축 면적은 1만8,678평이었는데, 유효지 면적은 국유화되는 물양장 면적 150평을 제외한 1만8,528평이었다. 매축 면적 1만8,678평은 <표 3>의 설계인가신청 당시의 매립면적 1만8,980평보다 302평이 작은 것이었는데, 이러한 축소는 주로 조성 후 국유화되는 물양장의 면적이 설계인가신청 당시의 459평에서 150평으로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이다. 물양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앞서 언급한 부두지대조성을 위한 새로운 매축계획(적기만 매축 3기 공사) 때문이었다. 1937년 10월 매축인가신청서를 제출한 동 계획은 1939년 2월 15일자 '土第49號'로 조선총독부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았다. 부두지대조성을 위한 매축은 A구역 추

28) 釜山築港株式會社, 「第參期營業報告書(1939.6-12)」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池田國司, 앞의 책, 1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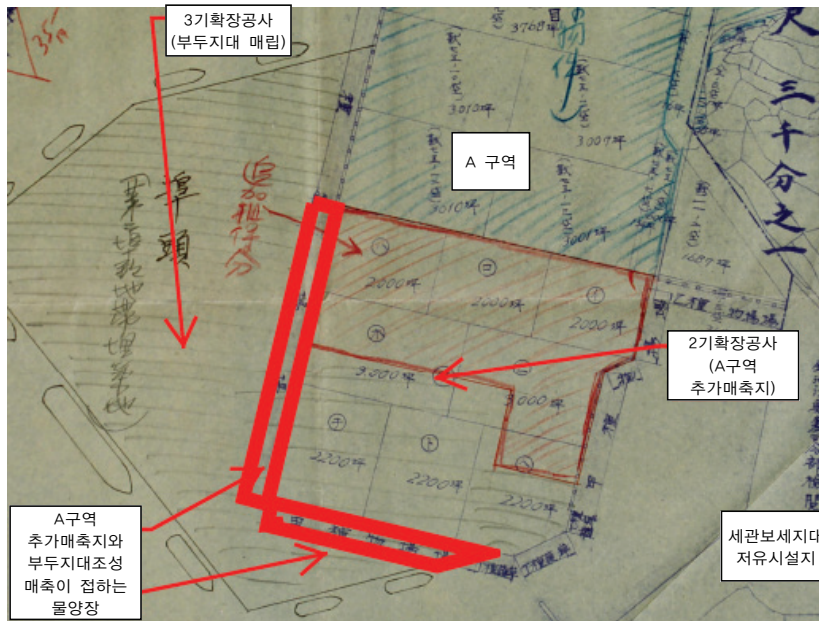
29) 釜山築港株式會社, 「公有水面埋立工事竣工期間延長願(1939.5.15)」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30) 釜山築港株式會社, 「公有水面埋立工事計劃變更並ニ分割許可申請書(1939.6.5)」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31) 朝鮮總督府, 「公有水面埋立工事竣工期間延長ノ件(1939.10.9)」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가매축지의 끝에서 시작하는 것임으로 여기에 접하는 곳에 원래 계획했던 물양장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없어졌다. 즉 <그림 5>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문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곳은捨石 투하 등의 기초 공사만을 한 상태로 두었다가 부두 지대조성 매축이 시작되면 거기에 포함하여 매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sup>32)</sup> 물론 A구역 추가매축지에 조성하려던 물양장은 부두지대가 매축되면 그 안에 조성될 것이었다.

<그림 5> A구역 추가매축지 물양장 중 부두지대조성 매축에 포함되는 지역



자료 :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32) 釜山築港株式會社, 「公有水面埋立工事計劃變更並ニ分割許可申請書(1939.6.5)」  
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한편으로 매축지 준공도 처음 계획과 달리 두 구역으로 나누어 시간을 두고 차례로 이루어졌다. 즉 이케다는 1939년 6월 5일자로 조선총독부에 매축지를 '(イ)'와 '(ロ)'의 두 구역으로 분할하여 매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10월 9일자로 승인되었다.<sup>33)</sup> 그리고 분할매축 허가와 동시에 이미 1939년 4월에 준공되어 있던 (イ)구역 1만408평(유효지 1만276평, 물양장 132평)이 우선 준공인가를 받았다.<sup>34)</sup> 분할 매축을 신청한 것은 이미 매축이 완료된 부지를 '시급히 이용할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sup>35)</sup>, 동척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sup>36)</sup> 미완성의 (ロ)구역은 1940년 2월 15일 준공된 후 4월 30일 부산부의 준공검사를 통과하여 6월 2일 준공인가신청서를 조선총독에 제출했고, 9월 30일 총독부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매립면적은 8,270평(유효지 8,252평, 물양장 18평)이었다. (イ), (ロ)구역을 지도상으로 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33) 朝鮮總督府, 「公有水面埋立工事計劃變更並=同工事區域分割ノ件(1939.10.9)」 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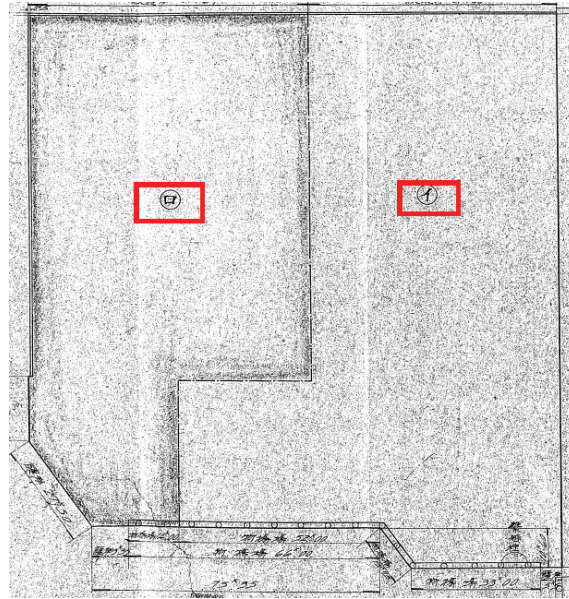
34) 이케다는 분할매축 허가신청 후 6월 19일부로 (イ)구역의 준공인가신청을 했고, 8월 2일 부산부의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9.18 경남도지사를 경유하여 조선총독부에 준공인가신청서가 송부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0월 9일 분할매축 허가와 함께 (イ)구역의 준공인가가 나왔다(朝鮮總督府, 「公有水面埋立工事一部竣工ノ件(1939.10.9)」 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35) 釜山築港株式會社, 「公有水面埋立工事計劃變更並=分割許可申請書(1939.6.5)」 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36) 당시 이케다는 조선신탁으로부터 대출받은 22만5,000엔 등의 상환을 위해 동척으로부터 51만엔의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A구역 추가매축지 중 우선 준공된 1만평을 준공인가를 받아 제공할 계획이었다(「釜山支店及池田佐忠氏貸出ノ件(1939.4.21)」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그림 6> A구역 추가매축지의 (イ), (ロ)구역 분할



자료 : 釜山築港株式會社, 「赤崎灣第2期工事 平面圖」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공사비는 <표 3>에서 보듯이 1937년 2월 공사실시를 위한 설계인가 신청 당시 22만엔을 상정했으나, 최종적으로 55만엔으로 2배 이상이 들었다.<sup>37)</sup> 전시통제기로 접어들어 발생한 물자난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공사비는 주로 차입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55만엔 공사비의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매축예정지 중 (イ)구역 1만408평을 우선 준공한 1934년 4월 현재 차입금은 12만2,000엔이었다.<sup>38)</sup>

37) 池田國司, 앞의 책 156쪽.

38) 釜山築港株式會社, 「資産調書(1939.4)」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차입금에 의존한 사업 경영은 이미 1920년대 부산 남항 매축 때부터 이케다 매축사업의 특징이었다. 거액의 투자비가 고정될 수밖에 없는 매축사업의 특성과 함께 이케다가 벌인 '부산남항 → 적기만 → 울산만 개발로 이어지는 사업의 규모 자체가 개인 자금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하나의 주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연이어 시작하는 이케다의 사업 스타일도 그가 항상 거액의 부채를 짊어지고 자금 유동성 문제에 허덕인 이유였다. 이런 상황이었음으로 그의 부채 중에는 단기·고리의 악성부채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sup>39)</sup>

차입금에 의존한 사업경영으로 인해 이케다가 매축한 부지의 대부분에 담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A구역 추가매축공사가 원래 계획보다 지연되자 계획을 변경하여 분할 매축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일부 준공된 매축구역의 인가를 따낸 것도 동척 차입금의 담보물로 매축된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A구역 추가매축공사와 관련해서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38년 6월 돌연 경성부동산(주)을 매립권자에 포함시켜 공동사업자로 받아들이고, 7월에 공사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조선신탁(주)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위임하고 있는데<sup>40)</sup>, 이것은 이케다가 이 두 회사를 연계하여 22만5,000엔의 대출을 받았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sup>41)</sup> 경성부동산과 공동소유하

39) 이케다는 적기만매축사업 등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150만엔 이상의 고리채를 이용했고, 이를 갚기 위해 1942년 9월 동척에 90만엔의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釜山支店及池田佐忠氏貸出ノ件(1942.9.18)」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

40) 慶尙南道知事, 「公有水面埋立ニ關スル件(1938.8.3)」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던 매립권은 매축지 (イ)구역 1만408평이 준공된 직후인 1939년 5월 다시 이케다에게로 넘어오게 된다. 이케다가 (イ)구역을 담보로 동척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차입금을 변제했기 때문이다.<sup>42)</sup> A구역 추가매축공사 중 (ロ)구역 8,200여평의 매립권을 동척에 1940년 6월 2일 전격적으로 양도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사실 (ロ)구역의 매축은 1940년 2월에 이미 준공되어 3월 16일자로 부산축항(주) 이케다 명의로 준공인가신청을 하였으나 6월 2일자로 매립권을 동척에 양도하면서 인가신청을 취소하고 같은 날 동척 명의로 재차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sup>43)</sup> 물론 이것 역시 이케다가 동척으로부터 거액의 차입금을 조달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케다와 동척의 밀접한 관계는 이미 이케다가 사업을 시작할 무렵인 1920년 전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1934년 적기만 매축사업을 시작하면서는 단순한 투자자에서 동업자로 관계가 보다 밀접해 졌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A구역 매축과 관련한 갈등에서 보았듯이 동척의 입장은 가급적 최소한의 지원으로 이케다 사업을 성공시켜서 거액의 대출금이 불량채권화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환수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A구역 추가매축공사가 완성되어 갈 즈음인 1939년을 기점으로 하여 동척의 자세에 큰 변화가 감지된다. 동척이 이케다 부채환수 보다 그의 사업에 보다 주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척의 자세 변화는 양자

41) 「釜山支店及池田佐忠氏外二名貸出ノ件(1939.4.21)」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42) 「釜山支店及池田佐忠氏貸出ノ件(1939.4.21)」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43) 朝鮮總督府, 「公有水面埋立工事竣工ノ件(1940.9.30)」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했다. 보다 긴밀해진 관계의 내용은 이케다가 동척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기존 동척 이외에 지고 있던 부채를 정리하여 차입금 조달선을 동척으로 단일화하는 것이었고, 동척 역시 이케다 사업에 대출을 미끼로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이케다의 부채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 요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대규모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케다는 기존 고래채 상황을 명분으로 매축 부지를 담보로 동척에 1939년 4월, 194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1만엔, 25만엔, 도합 76만엔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다.<sup>44)</sup> 이 대출 시점에 이케다가 동척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잔고는 대동석유 관련의 22만엔 정도가 있었는데, 동척은 이와 별도로 그 3배가 넘는 거액을 단기간에 대출해 준 것이다.<sup>45)</sup>

동척과 이케다의 관계가 1939년을 기점으로 보다 밀접해진 이유는 이케다의 매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 시기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기 때문이었다. 적기만 마지막 매축사업인 부두지대조성 매축과 임항철도 건설사업의 시작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은 조선총독부의 부산항 확장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는 한편으로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는 상황과 연결되어 일개 민간업자의 영리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의 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다. 국책회사의 성격을 강화해 가던 동척의 입장에서는 이케다 사업 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한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동척이 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거액의 저리 대출을 이케다에게 실시하여 그가 지고 있던 다른 쪽의 차입금을

44) 「釜山支店扱池田佐忠氏關係擔保地一部解除ノ件(1940.9.11)」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

45) 「釜山支店扱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ノ件(1940.2.1)」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정리하게 하고 차입금 조달선을 동척으로 단일화하는 것이었다. 동척의 지원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에 비례하여 이케다의 사업 역시 규모는 물론 내용에서도 큰 변화를 보였다. 즉 이케다는 동척의 막대한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1939년 시작한 부두지대조성 매축과 임항철도 건설 사업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경제성 있는 부지를 매축해 팔아치우고 끝나는 단순한 토건업자에서 항만개발업자, 나아가서는 도시 개발업자로 변신을 거듭했다. 적기만 A구역 해면을 다시 매축하여 부두를 조성하고 부산진에서 출발하는 임항철도를 부두 내에 직접 연결하는 것을 통해 적기반도를 부산항의 제2부두지대로 개발하는 것이 항만개발업자로서의 이케다의 시작이었다면,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울산만을 공업도시로 개발하고 동시에 일본 야마구치현 유아만을 개발하여 양쪽을 잇는 항로를 개설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개발업자로서의 완성을 꿈꿨다고 할 수 있다. 1940년대에 접어들어 이케다 매축사업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 VI. 결 론

적기만의 기존 A구역을 대략 2만평 정도 추가로 확장하는 2기 매축공사는 중일전쟁 발발직전인 1937년 6월 시작하여 1940년 2월 완성되었다. 2년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이며 55만엔의 공사비를 들여 1만8,678평의 정방평 매축지를 A구역 앞쪽 해면에 추가로 조성하였다.

이케다가 적기만 추가매축을 하게 된 동기는 1기 매축공사의 핵심인 기존 A구역의 공사착수 지연, 매축된 B구역의 부지판매

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다는 측면과, 그 타개책으로 이케다가 자신의 석유사업 관련 시설을 이 구역에 건설하기로 한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였다. 즉 이케다는 A구역 추가매립을 통해 기존 세관보세지대의 저유시설을 자신의 매축지 B구역으로 이전시켜 판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으로 자신의 석유사업 필요 부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케다의 구상은 성공하지 못했다. 세관보세지대에 저유시설을 가지고 있던 석유업자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그 결과 1936년 1월 조선총독부에 신청된 매축인가가 1937년 1월이 되어 서야 인가되었고, 인가된 매축계획의 내용도 이케다가 최초로 구상한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애초 이케다가 인가 신청한 계획은 공사비 20만엔을 들여 A구역 전면부 해안을 2만307평 매축하는 것이었으나, 1년 후 인가된 내용은 매축 면적을 1만8,634평으로 축소하고 매축 위치도 A구역 전면부를 일직선상의 매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매축된 부지의 용도도 저유시설 부지로 활용되는 것이 거부되었다. 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석유업자들이 주장하는 세관보세지대 앞의 해면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총독부가 1년간의 심의과정을 통해 석유업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었다. 여기에는 중요 군수물자인 석유 수급 차질을 우려한 군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케다는 자신의 원래 구상을 좌절시키는 변경된 계획대로 추가 매축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석유사업의 주체로 설립한 대동석유의 정유시설 부지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부산항의 항만기능 확장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계획과 연동되어 적기만에 제2부두지대를 조성하는 3기 추가매축을 계획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동척이 이케다 사업자금을 거의 전담

하다시피 하면서 사업의 규모는 커졌고,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동척의 전면 지원에 힘입어 1939년 부두지대 조성매축과 임항철도 건설을 시작으로 이케다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후고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 일본국립공문서관 폐쇄기관청산관계문서(청구기호:分官-09-040-00・財001502180100).
-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貸出綴』, 일본국립공문서관 폐쇄기관청산관계문서(청구기호:分官-09-040-00・財001502182100).
- 東洋拓殖株式會社, 『池田佐忠氏外二名貸増綴』, 일본국립공문서관 폐쇄기관청산관계문서(청구기호:分官-09-040-00・財001502181100).
- 朝鮮總督府, 『埋立竣工書綴(昭和十五年)』, 국가기록원 소장문서(MF번호:88-0285)
- 朝鮮總督府, 『昭和十六年度 港灣修築改良工事實施計劃』, 국가기록원 소장문서(MF번호:88-0322)
- 池田國司, 1999, 『池田佐忠 事業と人生』.
- 배석만, 2012, 「1930년대 부산 赤崎灣 매축 연구」 『港都釜山』 2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 배석만, 2012, 「부산항 매축업자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기업 활동」, 『한국민족문화』 4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적기만(赤崎灣) 제2기 매축공사의 구체적 실태를 분석했다. 이케다가 1기 매축에 이어서 곧바로 적기만 추가매축을 하게 된 동기는 기존 매축지 B구역의 판매와 자신의 석유사업 필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케다의 구상은 성공하지 못했다. 세관보세지대에 저유시설을 가지고 있던 석유업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매축인가권을 쥐고 있던 조선총독부는 1년간의 고심 끝에 석유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군수물자인 석유수급 불안을 염려하여 이케다 구상에 반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이로 인해 이케다의 매축계획은 그가 애초 신청한 것보다 부지면적이 축소되고,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부지 용도도 바뀌는 등 크게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케다는 변경된 계획을 수용하고 추가 매축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이케다가 석유사업의 주체로 설립한 대동석유(주)의 정유시설 부지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둘째는 부산항의 항만기능 확장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계획과 연동되어 적기만에 제2부두지대를 조성하는 3기 추가매축을 계획했기 때문이었다. 1937년 6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1940년 2월 완료되었고, 공사비 55만엔이 투자되어 1만8,678평의 부지가 A구역 앞쪽 해면에 추가로 조성되었다.

**핵심주제어** : 부산항, 적기만,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 매축, 석유업자



**【Abstract】**

---

---

**A Study on Additional Reclamation of Jeokgi Bay  
(赤崎灣)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Period**

Bae, Suk Man / Korea Univ.

---

---

This study analyzed the specific conditions of the second-stage reclamation construction of Jeokgi Bay (赤崎灣) by Suketada Ikeda (池田 佐忠). In order to sell his previous reclamation land, Section B, and secure the site necessary for his oil business, Ikeda carried out the additional reclamation of Jeokgi Bay immediately after the first-stage reclamation. However, his plan did not succeed. It was because oil traders who owned oil storage facilities in the customs bonded area opposed to hi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at had the authorization right of reclamation found in favor of the oil traders after one-year consideration. The military authorities opposed to Ikeda's plan and exerted influence on this decision because they concerned about the unstable supply and demand of oil, an important war material. Thus, the reclamation plan by Ikeda had to accept large changes such as reduction of site area from his original plan and change in location and use of the site.

However, Ikeda accepted the changed plan and performed the additional reclamation. The reasons include two conditions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ractical problem of securing the site for oil refining facility of Daedong Oil Company (大東石油株式會社) founded by Ikeda as a main body for his oil business. Second, he planned the third-stage additional reclamation developing the second quayside in Jeokgi Bay in conjunction with plan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 expand the port functions of Port of Busan. The construction that started from June 1937 was completed in February 1940 and cost 550,000 yen as a construction cost. As a result, a new site of 18,678 pyeong (≒61,745.4545 square meters) was additionally developed on the sea surface in front of Section A.

**Key Words** : Port of Busan, Jeokgi Bay (赤崎灣), Suketada Ikeda (池田 佐忠), reclamation, oil trader

투 고	심 사	완 료
2012. 10. 30	2012. 11. 30	2012. 12. 15